

민원사무명	목재생산업 등록				
민원내용	목재생산업(원목생산업, 제재업, 목재수입유통업) 등록 신청				
근거법규	인가 :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변경 :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				
주관부서	도시개발과	협조부서 (기 관)	없 음	처 리 기 간	20일
현장조사사항	없 음				
업무흐름도 및 위임전결사항	접수 ⇒ 서류검토 ⇒ 결재 ⇒ 인가서 교부 (위임전결 : 과장)				
구 비 서 류	<민원인 제출서류> 공통서류 :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서 [별지 제31호 서식] 1.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. 인력·시설 보유현황 [별지 제32호 서식] 나.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(재직증명서, 자격증사본 등) 다.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(전년도말 기준 회계사·세무사 발행한 재무재표 등) 라.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(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고,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) 2. 목재수입유통업 : 제1호 가목 및 라목의 서류 <담당공무원 확인사항> 1.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됩니다) 2.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				
관련부서 (기 관) 협조사항	관련부서명	협 의 사 항			
	없 음				
후 속 이행사항	후속민원명	절 차	시 기	처리부서	조치사항
	없 음				
수수료 및 제반경비	없 음				
관련후속 이행사항	신고내용의 변경 또는 인력보유현황 신고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신고				